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주식회사 하람
소유물건(2024타경72582)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법보좌관 박병선

감정평가서번호: TP 2024A-03-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 토평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윤호

감정평가액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법보좌관 박병선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매5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하람 (2024타경72582)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3.11	2024.03.08 ~ 2024.03.11	2024.03.11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	구분건물	1	-	35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5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 경춘선 평내호평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층 제813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유면적 : 99.82㎡)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건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가. 대상물건 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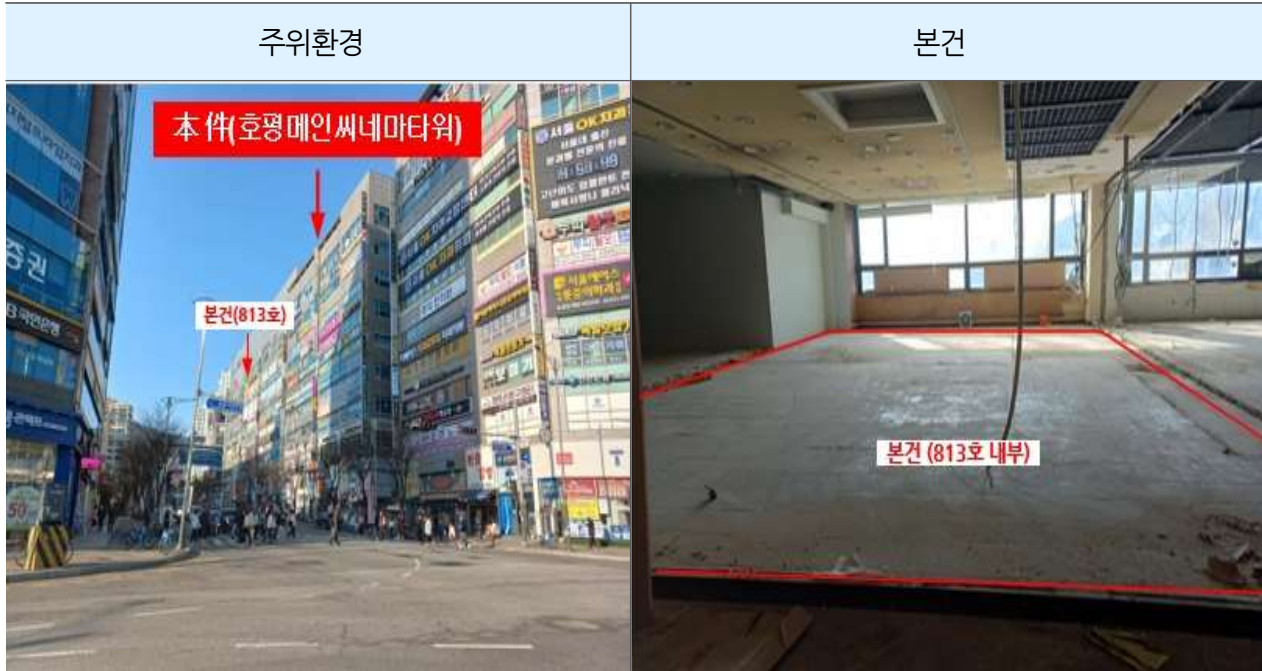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40 [도로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6]		
건물명 및 층·호수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층 제813호		
건물 개황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3,258.7	33,238.82	4/9층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2종근린생활시설	2006.06.30

기호	층·호수	이용상황	전유면적(㎡)	공용면적(㎡)	합계면적(㎡)	대지권면적(㎡)
가	제8층 제81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99.82	150.25	250.07	24.51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의 ‘주’에 해당하는 면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대상물건 현황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 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의 조건

본 건 감정평가에 있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본 건의 가격조사완료 일자인 2024년 03월 11일자로 하였음.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조사는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3월 11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전조사, 공부발급, 가격자료 수집 및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물건의 개별적 상황 등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5. 기타 참고사항

- 1) 본 건의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공부에 의하였음.
- 2) 본 건은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벽체가 철거된 상태로서 인접호수와 함께 인테리어공사 중 공사 중단된 채 장기간 공실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 3) 본 건은 현장조사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현황도를 참고하고 인근 상가 점유자, 중개업소, 관리사무실 등의 탐문조사 및 인근 평가전례 등에 의하여 위치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본 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 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 지역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및 건물의 구조, 시공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대상물건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건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바,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 개요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거래관행상 일체로 하여 거래되는 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격을 산정하였음.

2. 비교사례의 선정

가. 선정기준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한 거래사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해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례를 선정함.

- ① 거래시점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나. 본건 거래사례

(출처 : 실거래자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층·호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전유면적(㎡)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가	제8층 제81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99.82	2,454,418	2018.04.09	24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인근 거래사례

(출처 : 실거래자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0*호	2종근린생활 (휴게음식점)	32.96	120,000,000 (중개거래)	3,640,777	2022.10.04	2006.06.30
#2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1*호	2종근린생활 (휴게음식점)	30.42	89,000,000	2,925,707	2022.12.16	2006.06.30
#3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1*호	2종근린생활 (휴게음식점)	30.42	89,000,000	2,925,707	2022.12.16	2006.06.30
#4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0*호	2종근린생활 (휴게음식점)	13.3	41,000,000	3,082,707	2023.02.16	2006.06.30
#5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1*호	2종근린생활 (휴게음식점)	96.72	225,000,000 (중개거래)	2,326,303	2019.04.17	2006.06.30
#6	호평동 640-2 CH 리베로원 제80*호	사무실	114.57	297,000,000	2,592,301	2023.04.04	2005.11.25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 자료의 실거래자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하였으며, 이용상황은 현실의 이용상황(공실 등)에 불구하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를 기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비교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참고자료 중 대상과 인접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거래되어 거래가격의 신뢰성이 확보된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 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가	#1

마. 선정된 비교사례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0*호	2층근린생활 (휴게음식점)	32.96	120,000,000	3,640,777	2022.10.04	2006.06.30

※ 거래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최근거래사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KAIS)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거래조건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전제하였음.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지역 집합상가의 가격변동률”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 집합상가 가격변동률 (경기도 지역)

구분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2022년	0.0.49	0.46	0.47	0.15
2023년	-0.07	0.01	-0.04	0.22
2024년	-	-	-	-

- 시점수정치

기호	비교 사례	지 역 (산 정 기 간)	유형	시점수정치
가	#1	경기도 (2022.10.04 ~ 2024.03.12)	집합 상가	집합상가 지역 : 경기 (22.10.04~24.03.11) 2022년 04분기 : 0.15 2023년 01분기 : -0.07 2023년 02분기 : 0.01 2023년 03분기 : -0.04 2023년 04분기 : 0.22 2024년 01분기 : 0.22 (2023년 04분기 자료) $(1+0.0015*89/92)*(1-0.0007)*(1+0.0001)*(1-0.0004)*(1+0.0022)*(1+0.0022*71/92) \approx 1.0043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		검토의견	격차율
항 목	세 부 항 목		
단 지 외 부 요 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본 건은 비교사례와 동일 건물내 상가로 단지 외부요인 동일함.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의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건 물 요 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본 건은 비교사례와 동일 건물내 상가로 단지 내부요인 동일함.	1.00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 별 요 인	층별 효용, 향별효용	본 건은 비교사례와 동일 층, 향, 위치별 효용 등 제반 호별요인 유사함.	1.00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상업적인 효용성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등에 의한 소음		
기 타 요 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벽체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중단된 채 장기간 공실상태임.	0.96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0.9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대상 부동산 적용단가

$$\text{산정단가} = \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1	3,640,777	1.00	1.00435	0.960	3,510,350	3,510,000

나.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 = \text{전유면적} \times \text{전유면적당 단가}$$

기호	층/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1	제8층 제813호	99.82	3,510,000	350,368,200	35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시산가액(비준가격)의 합리성 검토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 (타입)	가격수준 (원/전용㎡)	비고
호평메인 씨네마타워	근린생활시설	8층	전유면적당 3,000,000~3,700,000 /㎡내외	내부인테리어 및 위치별효용 등에 따라 가격 격차 있음.

나. 본건 평가전례

최근 평가 사실 없음.

다. 인근 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층 / 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사용승인일
#ㄱ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70*호	근린 생활	328.8	822,000,000	2,500,000	2022.05.30 담보	2006.06.30
#ㄴ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40*호	근린 생활	207.57	546,000,000	2,630,438	2023.02.23 담보	2006.06.30
#ㄷ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90*호	근린 생활	2,384.86	6,650,000,000	2,750,686	2022.07.06 담보	2006.06.30
#ㄹ	호평동 641 에이스프라자 제80*호	근린 생활	70.73	209,000,000	2,954,899	2023.05.31 담보	2006.09.05
#ㅁ	호평동 638 성보빌딩 제70*호	근린 생활	181.78	1,257,000,000	3,515,238	2023.07.27 시가참고	2006.03.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근린생활시설 경매낙찰가율 통계 분석

- 경기도 남양주시

(출처 : 지지옥션, 남양주시, 최근 1년간)

용 도	진행건수	매각건수	매각율(%)	매각가율(%)
상가	22	7	31.82	70.93
근린시설	5	2	40.00	78.00

※ 매각가율(%)은 총매각건수의 감정평가금액 총액 대비 매각건수 총금액의 비율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결정의견

대상 부동산의 가격결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과 참고가격자료인 인근 부동산의 탐문조사 가격 수준, 거래가격 수준,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감정평가 선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동 · 층 · 호수	전유면적(㎡)	시산가액(원)	감정평가금액(원)
1	제8층 제813호	99.82	350,000,000	350,000,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전유면적(㎡)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층 제813호	99.82	3,500,000	350,000,000
합 계			35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6	640 호평메인 씨네마 타워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9층	지하4층	2200.46		35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지하3층	2707.46			
					지하2층	2707.46			
					지하1층	2707.46			
					1층	2341.02			
					2~7층 각	2571.89			
					8~9층 각	2571.81			
					일반상업지역	3,258.7			
					(내)				
					제8층 제813호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99.82	99.82		
1. 소유권	24.51								
-----	-----	24.51							
대지권	3,258.7								
합 계							₩350,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경춘선 평내호평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배후로 하는 상업지대로서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건 내 제8층 제813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마감

내벽 : 대부분 벽체 철거되었으며 동측 일부는 몰탈위페인팅,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나 현재는 인접 호수와 함께 벽체 구분없이 철거된 상태로 공실임.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10미터 포장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호평택지지구), 대로2류(폭 30m~35m)(주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집산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은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호평지구)<택지개발촉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나 공실상태로 임대여부는 미상임.
- 2) 본건은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인접호수와 벽체 구분없으며, 벽체는 철거된 상태임.

광역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8층 813호
-----	------------------------------------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8층 813호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40 호평메인씨네마타워 8층 813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본건 : 호평메인씨네마타워 제8층 제813호

**본 내부구조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를 기증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사 진 용 지



전면 주위환경(남->북)



후면 주위환경(북->남)



전경(북->남)

사 진 용 지



전경(남->북)



복도(남->북)



복도(북->남)

사 진 용 지



본건



벽체철거 및 내부



벽체철거 및 내부